



제재조치 공지

CBOT 13-9688-BC
발효일: 2016년 10월 6일

문서번호: [CBOT 13-9688-BC](#)

회원여부/비회원: **Manoj Jindal**

규정위반: **규정 432. 일반 위반 (일부)**

다음은 위반 행위이다:

B.2. 공정한 거래원칙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업무 처리절차에 관여;

Q. 거래소의 이익 또는 안녕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래소의 무결성 또는 명성을 손상할 경향이 있는 행위에 관여.

조사결과: 제재의 근거가 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**Manoj Jindal** (“**Jindal**”)의 합의 제안에 따라, 2016년 10월 4일 시카고상품거래소 (“**CBOT**”) 영업행위위원회 (**Business Conduct Committee**) 위원단(“**Panel**”)은 **Jindal**이 **CBOT** 회원사의 고용인이었던 시점에 관련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**CBOT** 규정 400과 402에 의거하여 **Jindal**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확인하였다. 위원단은 **Jindal**이 2013년 7월에서 11월에 이르는 기간 종 수일 간 실제 거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여러 대두 선물(**Soybean futures**) 시장에서 대규모 주문을 낸 사실을 확인하였다. 또한 위원단은 **Jindal**의 거래 전략이 **CME Globex** 전산거래 플랫폼(“**Globex**”)을 통해 시장 한편에서 소규모 주문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. 이 전략에 따라 **Jindal**은 소규모 주문 제출 후 **Globex**를 통해 최우선 매도(매수) 호가 혹은 그 근처에서 시장의 반대 쪽에 복수의 대규모 주문을 제출했다. 일단 소규모 주문이 체결되면 **Jindal**은 많은 경우 대규모 주문을 취소했다. 위원회는 이 전략을 실행하여 매수/매도 압력의 불균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, 남아 있는 **Jindal**의 소규모 주문의 반대 포지션 쪽으로 다른 시장참가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.

이에 따라 위원회는 **Jindal**이 **CBOT** 규정 432.B.2. 및 432.Q.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.

제재내용: 합의 제안에 따라, 위원단은 **Jindal**에게 벌금 \$75,000를 부과하고, **CME 그룹**의 트레이딩플로어에 대한 접근 및 **Globex**를 포함하여 **CME 그룹**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전산거래 및 청산 플랫폼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접근을 30일간



금지한다고 명령했다. 접근금지 기간은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1월 5일까지이다.

발효일: 2016년 10월 6일